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4. 10. 31.>

기록 · 비치하여야 할 사항(제145조 관련)

1.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·운영허가를 받은 자

기록사항	보존기간
가. 원자로시설의 위치	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
나.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	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
다. 원자로시설의 응력분석 등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	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
술자료	
라.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결과	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
마.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(품질보증	10년
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

2.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·운영허가를 받은 자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원자로시설의 검사기록		
1) 영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10년
2) 영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31조의 품질보증	검사한 때마다	10년
검사의 결과		
나. 운전기록		
1) 열출력 및 노심에 있어서의 중성자속밀도 및 온	연속적으로	10년
		
2) 원자로 본체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냉각재의 온		10년
도 · 압력 및 유량	다	
3) 제어재의 위치	운전 중 1시간마	1년
4) 원자로에 사용하는 냉각재 및 감속재(유체의 경	다 매인 1히	1년
우만 해당한다)의 순도 및 매일 공급량	' E 124	11.
5) 원자로(임계실험장치는 제외한다) 안에 있는 핵	배치 및 규체하 때	10년
연료집합체의 배치 및 교체 내용	마다	10 C
6) 원자로(임계실험장치는 제외한다) 안에 있는 핵	장전한 때마다	1년
연료집합체·감속재·반사재 및 원자핵분열의 연		
쇄반응의 반응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위하여 장		
전하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		
7) 운전개시 전 및 운전정지 후의 원자로 시설의 점		1년
검	한 때마다	

8) 운전개시·임계도달·운전교체·긴급차단 및 운 전정지의 시각	운전개시 등을 한 때마다	1년
9) 운전책임자 및 운전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	운전개시 및 교대 한 때마다	1년
다. 핵연료물질의 기록		
1) 핵연료물질(사용후 핵연료물질은 제외한다)의 원 산지별, 종류별, 인계·인수상대자별 인계·인수량 및 인계·인수사유		10년
2) 핵연료집합체의 종류별 장전량	장전한 때마다	10년
3) 핵연료물질의 재장전 시 원산지별, 종류별 주기 간 연소도 및 특수핵물질 생성량	매월 1회	10년
4) 사용후 핵연료의 원산지별, 종류별, 상태별 인 계·인수량 및 원자로에서 인출 시부터 사업소 외 로 반출 시까지의 기간 및 반출 시의 방사선량	반출한 때마다	10년
5) 핵연료물질의 원산지별, 종류별 분실 또는 손실된 수량 및 이유	분실 및 손실이 발 생한 때마다	10년
6) 핵연료집합체의 형상 또는 형상에 관한 검사 결과	재장전 및 인출한 때마다	10년
라. 감속재물질의 기록		
1) 감속재물질(규제물질만 해당한다)의 종류별 및 상태별 인계·인수량	인계·인수한 때마 다	10년
2)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분실 또는 손실된 수량 및 사유	손실이 생긴 때마 다	10년
3)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처리·저장량 및 방법	처리·저장한 때마 다	10년
4)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재고량	매월 1회	10년
마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) 원자로본체, 사용이 끝난 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	우저 주 매이 1히	10년
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·저장 및 배출시설 등의 방사선차폐벽 외 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	CC 0 112 121	10 &
2)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	1일간의 평균농도	10년
물질의 1일간 및 3개월간의 평균농도	는 매일 1회, 3개	
	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	
3)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 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	매주 1회	10년

4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	매분기 1회	원자로를 해
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	체할 때까지
5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	매분기 1회	5년
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	
6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		
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하기 시작한 때	체할 때까지
7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		5년
진단기록 이 바가려자여조기키기 케다 어디에 조기되는 기기	하기 시작한 때	이기그ㄹ 쉐
8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		
중의 건강진단기록 9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	마다 거기다스 참 때	체할 때까지
건강진단기록	마다	[] 전
10) 폐기시설 등 건설·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		원자로를 해
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운반일시 및 운반할 경로		신기도로 해 체할 때까지
11)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, 수량,	반입 또는 반출을	10년
처리방법 및 처리일시	한 때마다	
12) 원자로운전요원의 교육훈련 실적	교육을 한 때마다	5년
13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 수량,	자체처분을 한 때	5년
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	마다	
14)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량	매분기 1회	원자로를 해
(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)		체할 때까지
바.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기록		
1)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결과와 담당자 성명	매월 1회	1년
2) 원자로시설의 보수결과와 담당자 성명	보수한 때마다	1년
사. 원자로시설의 이용기록		
1) 이용의 목적 및 방법과 이용한 방사선의 방사선	이용한 때마다	1년
량률		
2) 원자로에 장전한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	장전한 때마다	1년
3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	원자로를 해
	한 때마다	체할 때 까지
4)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	수시	원자로를 해
7 12-1 0 0 X 2 2 1 1 1 0		체할 때 까지
		TE T 7111
5) 사고의 원인	사고가 발생한 때	원자로를 해
	마다	체할 때까지
6) 사고 후의 조치내용	조치한 때마다	원자로를 해

	체할 때까지
아. 기상기록	
1)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	10년
2)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	10년
3) 강우량 연속적으로	10년
4) 기온 연속적으로	10년
자.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	
1) 계측제어계통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및 긴급차단 검사한 때마다	10년
검사의 기록	
2)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교정에 관 매년 1회	10년
한 기록	
차. 원자로조종면허자 관리 기록	
1) 별표 4의3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매월 1회	해당 종사자
조건 이행 현황	가 퇴직할 때
	까지
2)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자로 조치한 때마다	해당 종사자
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	가 퇴직할 때
결함이 발생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	까지
별표 4의3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	
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치한 사항	

3. 정련사업자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핵물질의 기록		
1) 반입·반출·저장·사용·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·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		10년
되는 기록 2)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	작업한 때마다	10년
나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)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 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 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 면의 오염도	매주 1회	10년
2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정 련 사 업 을 폐지할 때까 지
3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5년

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4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	
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시작한 때	폐지할 때까
5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	5년
6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정 련 사 업 을 폐지할 때까 지
7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8) 폐기시설 등 건설·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 성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	인도를 한 때마다	정 런 사 업 을 폐지할 때까 지
9)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	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	10년
10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 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다. 유지관리의 기록	자체처분을 한 때마다	5년
1)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·점검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	매일 1회	1년
2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검사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	검사한 때마다	3년
3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	검사한 때마다	3년
라. 정련시설의 사고기록		
1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 마다	정 런 사 업 을 폐지할 때까 지
2)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	수시	정 런 사 업 을 폐지할 때까 지
3) 사고의 원인	사고발생한 때마다	정 련 사 업 을 폐지할 때까

		지	ĺ
4) 사고후의 조치내용	조치한 때마다	정 련 사 업 을	
		폐지할 때까	
		지	
			ı

4. 가공사업자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핵물질의 기록	1 1 1 1	
1) 반입·반출·저장·사용·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·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 는 기록		10년
2)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	작업한 때마다	10년
나. 가공시설의 검사기록		
1) 영 제141조에서 준용하는 제128조에 따른 시설검사	검사한 때마다	5년
2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검사기록	검사한 때마다	5년
다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)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 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	매분기 1회	10년
2)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 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 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 면의 오염도	매주 1회	10년
3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가공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4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5년
5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6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지할 때까지
7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지할 때 까지
8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9) 폐기시설 등 건설·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 성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	인도를 한 때마다	가 공 사 업 을 폐지할 때까 지

10)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	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	10년
11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 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라. 운전기록	자체처분을 한 때마다	5년
1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 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총반입량	반입한 때마다	1년
2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 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의 온도·압력 및 유량	연속적으로	1년
3) 가공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	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	1년
4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와 운전원의 성명및 근무교대 시각마. 유지관리의 기록		1년
1) 가공시설의 순시 및 점검상황과 그 담당자의 성명	매일 1회	1년
2) 가공시설의 보수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	보수한 때마다	가공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바. 가공시설의 사고기록		
1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	가공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2)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	수시	가공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3) 사고의 원인	사고발생한 때마다	가공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4) 사고후의 조치내용	조치한 때마다	가공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사. 기상기록		
1) 풍향 및 풍속	연속적으로	10년

2) 대기안정도	연속적으로	10년	
3) 강우량	연속적으로	10년	
4) 기온	연속적으로	10년	

5.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

5. 사중부탁원료시니사법사		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핵물질의 기록		
1) 반입·반출·저장·사용·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·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 는 기록		10년
2)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	작업한 때마다	10년
나.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기록		
1) 영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5년
2) 영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5년
다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)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·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·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등의 방사선량률	운전 중 매일 1회	10년
2)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 평균농도	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, 3개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 회	10년
3) 방사성폐기물의 해양방출구에서 1일간 및 3 개월간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방출량과 평균 농도	1일간의 양과 평균농	10년
4)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 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1일간의 방사성물 질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 면의 오염도		10년
5) 해양방출구 주변 해역의 해수, 해저토, 해양 생물 등 해양시료 중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농도	매분기 1회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6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7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5년

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8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9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10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
11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12) 폐기시설 등 건설·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		지털 때까지 5년 사용후핵연료
선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13)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,		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수량,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14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 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라. 운전기록	때마다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	5년
1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총반입 및 그 일시	반입한 때마다	1년
2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 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온도·압력 및 유량	연속적으로	1년
3)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	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	1년
4)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 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 및 운전종 사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		1년
마. 유지관리		
1)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 결과 와 그 담당자의 성명	매일 1회	1년
2)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보수 결과 및 그 담 당자의 성명	보수한 때마다	5년

바.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기록 1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2)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	수시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3) 사고의 원인	사고가 발생한 때마다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4) 사고 후의 조치 내용	조치한 때마다	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폐 지할 때까지
사. 기상기록		
1) 풍향 및 풍속	연속적으로	10년
2) 대기안정도	연속적으로	10년
3) 강우량	연속적으로	10년
4) 기온	연속적으로	10년

6. 핵연료물질사용자

0. 100 1		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핵물질의 기록		
1) 반입·반출·저장·사용·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·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 는 기록		10년
2) 핵연료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	작업한 때마다	10년
나. 시설검사기록		
영 제7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5년
다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) 사용시설 등의 방사선차폐체 외부표면의 방사선량률 2)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		5년 5년
	,	

	에는 연속적으로)	
3)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	매주 1회	5년
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도		
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		
4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사용을 폐지
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	할 때까지
5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5년
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	
6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사용을 폐지
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시작한 때	할 때까지
7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5년
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
8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	할 때까지
9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의 건강진단기록		
10)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	인도를 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성폐기물의 종류, 수량,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		할 때까지
11)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,	반입 또는 반출을 한	10년
수량,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	때마다	
12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	자체처분을 한 때마다	5년
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		
라. 유지관리기록		
1) 사용시설 등의 순시 및 점검 결과와 그 담당	메이 1 최	1년
자의 성명	배 현 1 위 	1 1 1
2) 사용시설 등의 보수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	보수한 때마다	5년
명		
마. 사용시설 등의 사고기록		
1) 가구되게 다 보고시기		1 0 0 -1 -1
1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한	' ' - '
	때마다	할 때까지
2) 사고상황 및 사고조치 내용	수시	사용을 폐지
		할 때까지
3) 사고 원인	사고발생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		할 때까지
4) 사고 후의 조치 내용	조치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4/ 기포 구의 고의 네핑	그기인 베티너	가용을 페시 할 때까지
		ㄹ 뻬/기/ኘ

7. 핵원료물질사용자

	T	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핵원료물질의 종류별 인수·인도량 및 재고량	인수 · 인도량 및 재고	5년
	량이 변동된 때마다	
나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		
1)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	 매부기 1회	5년
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	1 1 2 7 1 2 7	
2)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	 매주 1회	5년
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	11 1 2 1	
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		
3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부기 1회	사용을 폐지
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1,6,1,2,1	할 때까지
4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5년
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
5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사용을 폐지
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시작한 때	할 때까지
6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
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
7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	할 때까지
8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의 건강진단기록		
9)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, 수	반입 또는 반출을 한	10년
량,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	때마다	
10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	자체처분을 한 때마다	5년
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		
다.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사고기록		
1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한	지원은 레기
1) 시고일 8 옷 되 [길시 	때마다	할 때까지
	I M F F F	월 베까지
2)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	수시	사용을 폐지
		할 때까지
3) 사고의 원인	사고가 발생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	. , 2 0 2 , , , ,	할 때까지
4) 사고 후의 조치 내용	조치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
	_ '	할 때까지
8 방사선동의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	 (시고사요가느 게ㅇ	

8.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)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
가.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(생산 또는 사용일시·장소·방법·목적·종사자성 명·종류 및 수량)		5년
나.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·처리·저장 및 배출기록(일 시·장소·방법·종사자·성명·종류 및 수량)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5년
 다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		
1)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, 사용, 분배, 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	측정한 때마다	5년
2)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 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	측정한 때마다	10년
률 3)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	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	10년
4)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	작업한 때마다	10년
5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사용을 폐지 할 때까지
6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5년
7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	사용을 폐지 할 때까지
8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	5년
9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사용을 폐지 할 때까지
10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11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, 종류, 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	자체처분을 한 때마다	5년

9.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입 또는 판매기록(일 시·종류 및 수량)	구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	5년
나.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·처리·저장 및 배출기록(일 시·장소·방법·종사자 성명·종류 및 수량)		5년

다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		
1)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배·저장·보관·처리 및 배출시설의 방사선량률	측정한 때마다	10년
2)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	측정한 때마다	10년
3)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	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	10년
4)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 체표면의 오염도	작업한 때마다	10년
5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판 매 사 업 을
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	폐지할 때까
6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메부기 1 회	지 5년
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게신기 1의 	01
7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판 매 사 업 을
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시작한 때	폐지할 때까지
8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5년
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
9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
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	폐지할 때까
10) 소기호이라라 페리 시묘제 조기되는 키키	기기기다 이 된 메리다	지
10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건성신년할 안 때마나	5년
	자체처부을 하 때마다	5년
수량, 방사선량률,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

10. 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허가를 받은 자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방사성폐기물기록		
1) 인수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	인수한 때마다	영구
2)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일시 및 인수장소	인수한 때마다	영구
3)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·	처리한 때마다	영구
수량 및 처리방법·일시		
4) 처분시설에 영구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	영구처분한 때마다	영구
류·수량·처분방법·처분위치 및 총방사능 농		
도		
5)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·종류·	자체처분한 때마다	5년
수량·방사선량률·처분방법 및 처리일시		

나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		
1)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, 처리시설, 처분시설 등의 방사선량률	측정한 때마다	10년
2)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 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	매분기 1회	10년
3)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 선량과 공기 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 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 면의 오염도		10년
4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 지
5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매분기 1회	5년
6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 지
7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8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5년
9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 의 건강진단기록 다. 폐기시설등의 검사기록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
1)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10년
2)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5년
3)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의 결과	검사한 때마다	5년
라. 운영유지관리의 기록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·점검·보수결 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		· 순시 · 점검: 1년 ·보수: 폐기시

		설등의 건 설 · 운 영 을 폐지할 때까 지
마. 폐기시설등의 사고기록		71
1)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	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지
2)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	수시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지
3) 사고의 원인	사고가 발생한 때마다	–
4) 사고 후 조치 내용	조치한 때마다	페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지
바. 환경감시		케이털 베끼이
1) 시료채취 장소 및 일시	시료채취한 때마다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지
2) 시료분석 방법 및 결과	시료분석한 때마다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지
3) 환경방사선 측정방법 및 결과	측정한 때마다	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을 폐지할 때까지
사. 기상기록		4 1E 4/1
1) 풍향 및 풍속	연속적으로	10년
2) 대기안정도	연속적으로	10년

11. 판독업무자
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피폭방사선량 평가 관련 자료		
1) 다음의 구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판독의 기	평가한 때마다	판독업무등록
초자료		을 폐지할 때
가)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: 소자		까지

별 반응 및 스펙트럼 등의 기초 자료		
나) 재사용이 불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: 피		
폭 이미지가 영구 기록된 해당개인선량계		
2) 개인피폭 방사선량 측정결과	평가한 때마다	판독업무등록
		을 폐지할 때
		까지
나. 판독장비의 검사 및 교정기록	검사 및 교정한 때마	5년
	다	
다. 영 제115조에 따른 판독검사 결과	검사한 때마다	5년

12. 업무대행자

12. 日19167		
기록사항	기록시기	보존기간
가. 업무대행 실적		
1) 업무대행 내용 및 기간	업무 대행 때마다	업무대행등록
		을 폐지할 때
		까지
2) 방사선작업 내용 및 결과	업무 대행 때마다	업무대행등록
	H - O	을 폐지할 때
		까지
3) 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	업무 대행 때마다	업무대행등록
전관리대행 실적		을 폐지할 때
		까지
나.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		
1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매분기 1회	의뢰받은 업
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	무대행을 종
		료한 후 5년
 2)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	 매부기 1회	5년
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	11 (2 × 1 × 2 × 1	
3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	체다 어므에 조사하기	의뢰받은 업
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	시작한 때	무대행을 종
		료한 후 5년
4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		5년
건강진단기록	시작한 때	
5)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의뢰받은 업
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		무대행을 종
		료한 후 5년
6)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의 건강진단기록		
-1 60 6 67 1 1		